

『구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근한 의원 외 7명

2.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을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국·내외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등 관련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9조제1항)
 - 당 초 :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 제출 및 출국 30일 전 심사위원회 소집
 - 개정안 : 출국 30일 전 출장계획서 제출 및 출국 20일 전 심사위원회 소집
- 출장보고서 제출
 - 당 초 :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직접 발언
 - 개정안 :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 보고

4. 검토의견

- 본 조례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을 당초 출국 45일 전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에서 30일 전 제출로 개정하여 국·내외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더욱 내실있고 책임성 있는 계획서 작성이 요구될 것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비교하여 적정한 시기로 판단됨.
- 출장보고서 제출 개정 부분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여 표준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행정안전부]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

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내 조례 및 규칙 현황

구 분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	심사위원회 소집 기한
경북도	출국 30일 전까지	소집 기한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포항	"	"
경주	"	"
안동	"	"
구미	출국 45일 전까지	출국 30일 전 위원회 소집
영주	출국 30일 전까지	소집 기한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영천	"	"
상주	"	"
문경	"	"
경산	"	"
의성	출국 20일 전까지	소집 기한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청송	출국 30일 전까지	"
영양	"	"
영덕	"	계획서 제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칠곡	"	"
예천	"	"
봉화	"	"
울진	"	"